

1. 개정이유

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,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노천채굴을 제한(단,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노천채굴 허용)하는 것으로 광업법이 개정('26.8.11.)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허가 신청방법 및 양식 등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개정 광업법 제44조제4항에 규정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의 노천채굴 허가에 대한 신청 및 허가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. (안 제22조의2)

나. 이에 대한 신청서 및 허가증 서식을 신설함. (별지 제30호의2, 제30호의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중

라. 기 타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산업통상부령 제 호

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노천채굴의 허가신청 등)①법 제4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노천채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노천채굴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채굴계획서
 2. 노천채굴을 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노천채굴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노천채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별지 제30호의2 서식, 제30호의3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노천채굴 허가신청서

※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	14일	
신청인 (채굴권자)	상호 또는 명칭			설립연월일			
	성명			주민(법인)등록번호			
	주소			(전화번호:)			
채굴권의 표시	광구 소재지						
	등록번호		제	호	광업지적		지적 제 호
	광종명		광	면적		헥타르	
노천채굴 토지세목	소재지		지 번		지 목		면 적(㎡)
노천채굴 사 유							

「광업법」 제44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천채굴의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채굴계획서 1부	수수료
	2. 노천채굴을 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,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·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)	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토지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 리 절 차						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재	→	시 행	→	허가여부 통보
처리기관: 산업통상부										

제 호

노천채굴 허가증

채굴권자

상호 또는 명칭

설립연월일

성명

주민(법인)등록번호

주소

(전화번호:)

채굴권의
표시

광구 소재지

등록번호

제

호

광업지적

지적

제

호

광종명

면적

헥타르

광

노천채굴
허가지역

소재지

지 번

지 목

면 적(㎡)

「광업법」 제44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
노천채굴 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부장관

직인

* 허가조건 :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2조의2(노천채굴의 허가신청 등)①법 제4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노천채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노천채굴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1. 채굴계획서</u> <u>2. 노천채굴을 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u> <u>②산업통상부장관은 노천채굴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노천채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</u> <u><부 칙></u> <u>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</u>
<u><신 설></u>	